

### [제목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]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,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다음의 펀드를 수시공시합니다.

#### 1. 공시 사유

가.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의거,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정됨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

나.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거,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2. 공시 내용

펀드명	운용사	설정일	공시사유 발생일	설정잔액 (백만)	공시 사유
PCA 글로벌기초산업증권투자자산신탁 제1-1호[주식] 클래스 C-E	PCA자산운용	2007.08.31	2011.12.12	88	위 공시 사유 중 '나'
JP모간 인디아 증권투자자산신탁 C-E (주식)	JP모간자산운용	2008.04.10	2011.12.13	179	
JP모간 에버그린멀티에셋 증권투자자산신탁(주식혼합-재간접)C-E	JP모간자산운용	2008.06.16	2011.12.13	19	
우리 퓨처에너지 증권 투자신탁 제1호[주식] C-E	우리자산운용	2008.01.08	2011.12.08	193	

상기 펀드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본 펀드의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3. 공시 일자

2011년 12월 30일 (펀드별 공시 사유 발생일: '2. 공시 내용' 참고)